## ∨ 사업비 집행 및 정산지침

## 1 사업비 지급 및 집행기간

### □ 사업비 지급

1~2분기				3~4분기			
1회차		2회차		3회차		4회차	
신청 시기	지급 비율	신청 시기	지급 비율	신청 시기	지급 비율	신청 시기	지급 비율
협약 체결 시	20%	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	46%	중간 평가 후 1개월 이내	9%	4분기 (10월)	25%

<sup>※</sup> 지급비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회차부터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음

### □ 사업비 집행기간

- '24. 1. 1. ~ '24. 12. 31.
  - ※ 동 기간 이외의 사용금액은 불인정 금액으로 간주하고 전액 반납해야 함
  - ※ 단, 집행기간 연장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을 시에는 그 기한까지는 인정

# 2 사업비 계좌관리 및 사용원칙

### □ 사업비 계좌관리

○ (별도 계좌개설 필수) 각 지원 대상자는 당해 랩 운영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관리하는 통장(법인명의)을 주관·참여기관 별로 각각 개설하고, 해당 계좌와 연계된 연구비카드(KCA)만 개설하여 사용

### □ 사업비 사용원칙

- 총사업비는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
-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,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,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제작비로 인정함(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)

- 부가가치세,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, 사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집행과 제한 업종 가맹점 등에서는 전용 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
- 선정 랩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)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※ 컨소시엄 간 계약 불가
-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금액에 한하여 조달청(나라장터 등)을 이용해야 함
  -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
  -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
- 모든 증빙서류는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, 협회가 요구할시 즉시 응하여야 함
- 정부지원금은 콘텐츠 제작 관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### < 정부지원금 사용 불가항목 >

o 유류비 사용	o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금액
o 자가시설 이용료, 감가상각비	o 사업과 관련 없는 자체보유 저작권료
o 관세, 부가세 등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	,
o 본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공간 임차료	

- ※ 주관기관, 참여기관 사업비 편성 시 여비는 각 기관별로 산출하여 편성해야 함
-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 되어야 하며, 지출목적이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함 ※ [붙임] ICT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및 세부내용 참조

## 3 인건비 편성

## □ 인건비 편성

- 아래 랩 참여인력별 등급 및 월 임금기준에 따라 참여인력 인건비 지원
  - 참여인력 중 대학 및 대학원 교수 직위자들은 인건비 지급을 불인정하고 그 외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100%까지 인정
- 예) 1) 교수 직위자
  - ※ 지원대학(기업) 교수 직위자의 인건비는 불인정
  - 2) 그 외 참여 인력(박사과정의 경우)
  - ※ 월 임금 3,000,000원 기준 : 과제 참여율 50%(1,500,000원)로 편성할 경우, 편성된 참여율의 100%(1,500,000원)까지 인정

#### < 랩 참여인력별 등급 및 월 임금기준\* >

등 급	월 임금 (100%참여율 기준)	자 격 기 준
박사후연구원	소속기관 인건비 지급기준	콘텐츠 사업, R&D 등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자로,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박사급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, 박사 학위를 보유한자
박사과정	월 3,000,000원 이상	콘텐츠 사업, R&D 등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자로,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박사급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, 박사 대학원 과정인자
석사과정	월 2,200,000원 이상	콘텐츠 사업, R&D 등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자로,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석사급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, 석사 대학원 과정인자
학사과정	월 1,300,000원 이상	콘텐츠 사업 및 R&D 수행하는 자로써 학사과정인자, 회계, 정산, 예산 등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

- ※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, 석사, 박사과정의 기준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으로 월 임금 기준 편성
- ※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참여율 100%로 산정한 것이며,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증감하여 적용
- \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40조(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) 준용